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3-150

제출년월일 : 2003. 7. //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농업관련업무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업무의 연속성과
정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고자
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중 채소·특작·과수·화훼경쟁력제고 업무가
사회산업국업무와 중복으로 삭제하고 관광농업 개발업무를 사회산업국
으로 이관함(안 제6조)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관광농업 개발업무

제13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담당관·과·소		총 무 과 ☎940-4123
입 안 자	총 무 과 장	이 한 원
	인사조직담당	이 기 영
	담 당 자	이 종 춘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6조(사회산업국)① (생략) ②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-21. (생략) (신설)	제6조(사회산업국)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-21 (현행과 같음) 22. <u>관광농업 개발업무</u>	
제13조(업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 1-4. (생략) 5. <u>관광농업 개발업무</u> 6. <u>채소, 특작, 파수, 화훼경쟁력 제고</u> 7-8. (생략)	제13조(업무) ----- 1-4. (현행과 같음) 5. (삭제) 6. (삭제) 7-8. (현행과 같음)	